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월간 뉴스레터

2017년 3월호

Monthly Newsletter of Hanul Choongjung LLC

Contents

회계정보

-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공개초안 등
- 최근 변경·시행된 감리 및 외부감사 제도 유의사항 안내

세무정보

-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 개인의 소액 세금포인트 개편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수정사항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 /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 8**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Horwath Internation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의 Newsletter 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Memb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전화번호 : 02-316-6659(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horwath.co.kr

Website : www.crowehorwath.co.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회계정보 등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금융위원회 2017.1.23)

(1) 개요

6·대 핵심과제, 12대 세부과제를 통해 회계부정 (분식회계·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감사인 지정과 금강원 감리를 활용하여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10년 주기로 재무정보 신뢰성과 회계 투명성을 검증하는 “상장회사 회계점검”을 실시

(2) 주요내용

가. 선임:

①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제 확대 (상장회사 지정 확대)

i) 지정사유를 늘려 현행 직권지정제 확대

ii)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분식회계에 취약한 회사에 대한 선택지정제 도입

※ 상장회사 중 직권지정제로 약 10%, 선택지정제로 약 40%

→총 50%의 회사가 감사인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

⇒ 보수덤핑, 연속감사 수임부담 없이 감사에 전념 가능

②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실제 운영이 법인화되지 않거나, 품질관리가 미흡한 ‘무늬만 회계법인’이 아닌 명실공히 자격을 갖춘 회계법인만이 투자자 보호가 중요한 상장회사를 감사

나. 감사:

① (핵심감사제) 수주산업에 적용하고 있는 핵심감사제를 감사 위원회 의무설치회사 (자산 2조이상 상장회사)는 '18년 사업보고서 부터 적용하고, '23년까지 전체 상장회사에 확대 도입

② (비감사용역 제한) 비감사용역 금지대상을 확대하고, 회계법인이 감사중인 회사의 비감사용역 뿐만 아니라, 연결된 자회사의 비감사용역도 제한

다. 감독:

① 감리주기 단축 (현재 25년 → 10년내로 절반 이상 단축)

전체 상장회사를 10년 주기로 全數 감리하고 특히, 지정감사를 받지 않은 상장회사는 6년內 우선감리

② (제재 실효성)

제재 (행정벌 및 형사처벌) 실효성 대폭 강화

⇒ 전체 상장회사 회계 투명성과 회계법인 감사 신뢰성을 검증하고, 적발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一罰百戒」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수준으로 처벌 강화 → 형벌은 5~7년에서 10년 이하로 상향, 과징금 상한 (20억) 폐지

회계기준위원회(2017. 1. 20.) 회의결과
**K-IFRS 2014-2016
연차개선 개정안**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K-IFRS 제1112호 개정) 개정안
(1) 주요 내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K-IFRS 제1112호)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의견 수령 결과를 반영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개정안을 확정하고자 함

- (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 등으로 분류된 타 기업에 대한 지분에 대해 K-IFRS 제1112호 문단 B10~B16을 제외한 K-IFRS 제1112호의 다른 공시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적용

(2) 후속 절차

회계기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확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K-IFRS 제1112호 개정) 개정안을 정규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후 공표할 예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제정 공개초안**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제정 공개초안
(1) 주요 내용

IFRS 해석위원회는 2016년 12월에 ‘IFRIC 22’를 발표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해석서를 제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제정 공개초안을 작성

- (회계논제)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을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거래일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다룸
- (결론) IAS 21 ‘환율변동효과’ 문단 21~22에 따라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해 비화폐성자산(예: 선급금)이나 비화폐성부채(예: 선수금)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임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음

(2) 후속 절차

공개초안을 발표하여 ‘17.1.23~’17.2.8일까지 외부의견을 조회할 예정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2014-2016
연차개선 공개초안**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공개초안
(1) 주요 내용

IASB는 2016년 12월에 ‘IFRS 2014-2016 연차개선’ 개정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기준서를 개정하기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공개초안을 작성

○ (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제1101호의 최초채택기업 단기 면제 규정에 대한 기한이 경과하였고,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이를 삭제함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K-IFRS 제1028호 문단 18에 따라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유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유하는 경우, 각각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음

(2) 후속 절차

공개초안을 발표하여 '17.1.23~'17.2.8일까지 외부의견을 조회할 예정

최근 변경 시행된
감리 및 외부감사
제도 유의사항 안
내

최근 변경·시행된 감리 및 외부감사 제도 유의사항 안내(금융감독원 2017.3.15)

(1) 개요

'16.12월 결산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및 감사인 선임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감리 및 외감제도 개정이 빈번하여 제도 변경 내용 및 시행시기 등과 관련하여 주의할 필요. 이에 따라 '17년 적용되는 감리 및 외감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여 외감법규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감사인의 충실한 감사업무 수행을 독려하고자 함

(2) 최근 변경·시행된 감리 및 외감제도 주요 사항

- [감사업무 및 비감사업무 수행 관련]
 - 가. 비감사용역 금지범위 확대
 - 나. 감사보고서 상 감사시간 및 외부전문가 활용실적 기재
 - 다. 핵심감사제(KAM) 적용
- [감사인 지정 관련]
 - 가. 감사인 자율지정 신청(3월말까지)
 - 나. 상장예정법인 등에 대한 복수감사인 지정 및 지정시기 단축 등
- [감리 및 제재 강화]
 - 가. 회사에 대한 분식회계 관련 과징금을 공시건별 합산 적용
 - 나.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강화
 - 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감사인에 대하여 금강원이 직접감리
 - 라. 감리결과 감사(감사위원)에 대한 조치기준 및 감사위원회 모범사례 적용
 - 마. 수주산업 공시강화 관련 감리 확대

**최근 변경 시행된
감리 및 외감제도
별 관련 법규 및
시행일**
참고자료: 최근 변경·시행된 감리 및 외감제도별 관련 법규 및 시행일

구분	관련 법령·규정 등	개정·시행일
[감사업무 및 비감사업무 수행 관련]		
비감사용역 금지범위 확대	공인회계사법(§21②)	'16.3.29.개정 '16.9.30.시행
감사보고서 상 감사시간 및 외부전문가 활용실적 기재	외감규정시행세칙 (외부감사실시내용)	'16.7.18. ^{주1)}
핵심감사제(KAM) 적용	회계감사실무지침	'16.1.1. 이후 시작 회계연도 ^{주2)}
[감사인 지정 관련]		
감사인 자율지정 신청	외감규정(§10①, 13③)	기시행제도
상장예정법인 등에 대한 복수감사인 지정 및 지정시기 단축 등	외감규정(§10⑦⑧, 13③)	'16.10.11.
[감리 및 제재 강화]		
회사에 대한 분식회계 관련 과징금을 공시건별 합산 적용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과징금 부과기준)	'16.7.13.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강화	외감법(§7③)시행령(§6)	'14.7.1.시행 ^{주3)}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감사인에 대하여 금감원이 직접감리	외감규정 (§29 의 2, 67, 75, 77)	'16.5.16.개정 '16.11.17.시행
감리결과 감사(감사위원)에 대한 조치기준 및 감사위원회 모범사례 적용	외감규정시행세칙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16.7.18.
수주산업 공시강화 관련 감리 확대	K- IFRS 1011 호(건설계약)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5- 1	'16.1.1. 이후 시작 회계연도

주 1) 감사시간 등의 경우는 '14.5.28. 개정, '14.11.28. 시행됨에 따라, 12 월 결산법인의 경우 '14 회계연도부터 적용됨

주 2) '16.1.1.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하고, 검토보고서는 '16.7.1. 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검토보고서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

주 3) 상장회사는 '14.7.1.부터 시행하고, 비상장회사는 '14.7.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12 월 결산법인의 경우 상장회사는 '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비상장회사는 '16 회계연도부터 시행). 조치의 경우 시행 첫해는 계도 위주로 운영하되, 그 다음해부터 실제 조치

세무지원본부

02 - 316 - 6600

세 무 정 보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국세청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정지원 대상

세정지원 대상은 여행·숙박업, 사후면세점 등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 관련 업종에서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정지원 내용

세정지원 대상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인세(3 월), 부가가치세(4.7 월), 종합소득세(5 월) 납부기한을 최대 9 개월까지 연장하고,

-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 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 년까지 유예하고,
-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입니다.

세정지원 신청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조세일실 우려가 없으면 1 억 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임.
- 또한, 관광 관련 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수출 감소 등으로 사업상 상당한 손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입니다.

개인의 소액 세금포인트 개편

세금포인트 사용 확대

국세청은 '17.3.2.(목)부터 개인납세자(*)가 납세담보 면제를 위하여 세금포인트 사용 시 현행 100점 이상일 경우만 적용하던 것을 50점(**)이상부터 사용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하기로 밝혔습니다.

(*) 개인사업자 및 급여생활자 등을 포함한 모든 개인납세자

(**) 세금포인트 50점은 2000.1.1. 이후 소득세 누적 납부세액 5백만 원에 해당

이용가능대상자 증가

이번 세금포인트 사용기준 완화로 222만 명(*)의 개인납세자가 새롭게 이용가능 대상자에 포함되었습니다.

(*) 세금포인트 50점 이상 100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개인납세자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의 절감 효과 기대

그간 활용하지 못한 소액의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의 절감 등 경제적 효과가 커 개인납세자의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소득세의 경우 보증액의 연 1.6% 수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수정사항

‘17.3.28.(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고용 및 저소득층 세제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최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고하기 위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고용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였으며,
- 저소득 가구의 소득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다만,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었던 혼인세액공제 신설은 저출산 대책 전반과 연계하여 정기 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정부안(‘17.2.6. 발의) 대비 수정사항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 인상 수준 조정(조특법 §26)

당 초 안	수 정 안
-------	-------

<p><input type="checkbox"/>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 인상</p> <p>○ (공제액) 기본공제액(①) + 추가공제액(②)</p> <p>① (기본공제액) 투자금액 × 0 ~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 적용 * 중소기업은 고용감소시에도 적용하되, 고용감소인원 1인당 1,000만원 차감 <p>② (추가공제액) 투자금액 × 3 ~ 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도액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1천 ~ 2천5백만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마이스터고 등 졸업생</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청년·장애인·60세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타 상시근로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r> </table> <p>* 중소기업은 각 500만원 추가</p> <p>○ '17년 투자분 추가공제율 인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 2%p ↑ (4~6% → 6~8%) - 중견 : 2%p ↑ (4~6% → 6~8%) - 대기업 : 1%p ↑ (3~5% → 4~6%) <p>○ (적용기한) '17.12.31</p>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2,000만원	청년·장애인·60세 이상	1,500만원	기타 상시근로자	1,000만원	<p><input type="checkbox"/> 추가공제율 인상 수준 조정</p> <p>○ (좌 등)</p> <p>○ '17년 투자분 추가공제율 인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 2%p ↑ (4~6% → 6~8%) - 중견 : 1%p ↑ (4~6% → 5~7%) - 대기업 : 현행 유지(3~5%) <p>○ (좌 등)</p>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2,000만원						
청년·장애인·60세 이상	1,500만원						
기타 상시근로자	1,000만원						

< 수정이유 >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감면 적용 배제

청년고용증대세제 중소기업 공제액 확대(조특법 §29의 5)

당 초 안	수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청년고용증대세제</p> <p>○ (적용요건) 직전 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p> <p>○ (공제금액) 청년 정규직근로자증가인원 × 일정 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중견: 700만원 - 대기업: 300만원 	<p><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추가 확대</p> <p>○ (좌 등)</p> <p>○ (좌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1,000만원 - 중견: 700만원 - 대기업: 300만원

○ (적용기한) '17.12.31	○ (좌 동)
--------------------	---------

< 수정이유 > 중소기업 지원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30의 2)

당 초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확대 ○ (적용기업) 중소기업 ○ (대상) '16.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 (요건) '17.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 (공제액) 1인당 500만원	<input type="checkbox"/> 적용 대상 및 공제액 확대 ○ (적용기업) 중소기업 및 <u>중견기업</u> ○ (좌 동) ○ (좌 동) ○ (공제액) 1 인당 500 만원 - 중소: 700 만원 - 중견: 500 만원

< 수정이유 >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혼인세액공제 제도(조특법 §92)

당 초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혼인세액공제 신설 ○ (적용대상)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로서 혼인한 자 ○ (공제액) 혼인신고한 해의 소득세액에서	<p>< 계 류 ></p>

50만원 공제 * 재혼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가능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적용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액공제 적용 가능(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 (적용기한) '19.12.31.

< 수정이유 > 정기국회에서 논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100의 3①, §100의 28①)

현 행 (개정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근로장려금 가구 요건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 일정 연령 이상(단독가구)일 것 - ('15년*) 60세 이상 * 근로장려금 지급연도 기준 - ('16년) 50세 이상 - ('17년) 40세 이상 <추 가>	<input type="checkbox"/> 단독가구 지급대상 확대 ◦ (좌 동) ◦ (좌 동) - ('15년*) 60세 이상 * 근로장려금 지급연도 기준 - ('16년) 50세 이상 - ('17년) 40세 이상 - ('18년 이후) 30세 이상
<input type="checkbox"/>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재산요건 ◦ 재산가액 1억 4천만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 (자녀장려금) 재산가액 2억원 미만 * '17년 지급분부터 적용 ◦ (근로장려금) 현행과 같음

< 수정이유 >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 47 조의 2 제 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동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국제세원-4771, 2016. 10. 28.).

■ 공통매입세액을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하기 위한 요건

공통매입세액을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것은 그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과 공급가액이 발생한 사업 부분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그 각 사업부분이 서로 분리·독립되어 있다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수 없음 (대법 2016두51788, 2017. 1. 25.).

업 무 소 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
|------------------------------------------------------------------------------------------------------------------------------------------------------------------------------------------------------------------------------------------------------------------------------------------------------------------------------------|-----------------------------------------------------------------------------------------------------------------------------------------------------------------------------------------------------------------------------------------------------------------------------------------------------------------------------|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59,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horwath.co.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Choongjung LLC is a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 Swiss association. Each member firm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Choongjung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member.